

제328회 임시회
2014.03.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2014. 03. 20 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12일

(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행 사업(안 제3조)
- 관리·운영 위탁, 수탁자 의무, 위탁계약 해지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)

-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허가, 이용료(안 제8조, 제9조)
- 위탁사무에 관한 지도감독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'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'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.
- 다만,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 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, 또한 관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814-39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·교육사업
2.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
3.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
4.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복지관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

관리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복지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관리·운영비) 도지사는 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2.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3. 제10조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4.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였을 때
5.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을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용허가)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이용료)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

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할 수 있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

1.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2.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
2.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
3.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

④ 제3항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지도감독)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